

조문해석요청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최*진
등록일자	2023-04-10
수정일자	2023-04-10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문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질의자 소속기관 유형	대학

제도 분야(대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제도 분야(중분류)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제도 분야(소분류)	항목별 사용용도, 사용기준, 사용절차
기존 질의 참고 요청	학생인건비 지급 문의 보기
조회수	12
처리상태	완료
해석요청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학생인건비 관련 Q&A에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Q3. 졸업예정자가 졸업하는 월의 연구참여기간과 학생인건비계상률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졸업일 이후에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아니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 연구참여기간은 졸업일까지로 작성 필요

- 다만 졸업월의 말일이 아닌 일자에 졸업하더라도 해당 월 학생인건비계상률 100%로 계상하여 졸업월 말일까지의 연구 참여에 대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즉, 졸업월의 학생인건비를 졸업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조정할 필요 없음

→ a 학생연구자가 b 연구과제에 ~23.02.28.까지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23.02.24.에 졸업하였습니다.

졸업일 기준으로 b연구과제 참여기간 조정과 제출한 연구참여확약서도 수정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구참여기간은 2023년 2월 24일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경과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향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